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구분	원고측 주장(국민소송원고단 2,166명)	피고측 주장(원자력안전위원회)
<p>노후 중수로 폐쇄 영향</p>	<p>전 세계적인 원전 비중 감소 추세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정책은 달라져야 함.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전력소비효율을 높이며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음. 전력수급에의 영향 없음: 월성원전 1호기는 0.68기가와트로 폐로 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음.</p>	<p>계속운전의 경제성 관련 주장 :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속운전허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안전법은 안전성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할 뿐 경제성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p>
<p>운영변경허가 절차 논란</p>	<p>수명연장 허가절차인 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결여 : 원자력안전법령상 운영변경허가 시에는 운영변경허가신청서 외에도 운영허가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7종 서류'와, 그 7종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가 제출되어야 함. 그러나 한수원은 7종 서류 중 6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교표로 제출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개정안'으로는 비교표의 본래 취지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운영변경허가의 심의 부존재 : 운영변경허가가 아닌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의 주체인 피고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심의 없이 내부 전결로 처리하였음.</p>	<p>운영변경허가의 신청요건 충족 : 원자력안전법 제 20조제1항은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를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운영허가와 변경허가가 각각 제33조와 제34조로 나뉘어 있으며, 시행규칙 또한 제 16조, 제17조로 나뉘어져 있음.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운영허가와 변경허가는 신청 시 서류가 다른 것으로서, 운영변경허가신청 시에는 비교표와 운영허가증만 첨부하면 됨. 운영변경허가 심의 존재 :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은 국내 최고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KINS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받았고 이후 원안위에서 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10여차례의 검토를 거쳤으며, 피고 위원회의 3차례 회의 결친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p>
<p>최신기술기준 적용 여부</p>	<p>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 평가 누락 : 원자력안전법 상,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계속하려는 원자로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우 모든 평가사항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함. 그러나 피고 위원회의 고시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명시된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피고도 최</p>	<p>최신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한 기술평가 기준 반영 :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고시에서 정했고 고시에서 정한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R-7등을 활용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없음. 고시에서 평가에 활용될 최신기술기준을 일부 기준으로 제한했다 하더라도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위법사유가 아님.</p>

	신기술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 안전해석 분야마저 최신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함.	
안전성 목적 달성	안전성 목적 달성 불능 : 안전성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은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함.	안전성 목적 달성 가능 : 월성1호기는 현 상태로도 R-7, R-9 요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
참석위원의 결격 여부	결격자의 피고 위원회 의결 참가 :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기 때문에 표결은 그 자체로 무효사유에 해당함. 이은철 위원장의 경우 취임일 기준 3년 이내에 대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원자력이용자(한수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이며, 조성경 위원은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피고 원안위의 위원으로 부지사전승인에 관여하여 이중적 지위를 행사하였음.	피고 위원회 의결 시 참여위원의 결격여부 : 위원장 이은철과 조성경은 모두 한수원의 독단적 업무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문역할일 뿐, 대가를 전제로 과제를 수탁하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한수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음.
심의 과정	심의자료 미제공 상태에서 강행한 표결 :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였음.	-
지진 안전성	지진 안전성 관련 문제 :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그런데 월성 1호기 부지는 부지 인근에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는 등 지진에 취약한 부지임이 밝혀졌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전 부지로 부적합함. 또한 월성 1호기 지진 안전성 평가는 관련 자료 조사 및 연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지진안전성 확보 : 원고가 주장하는 활성단층은 지질학에서 지층의 운동시기를 구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학술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원전설계와 관련한 공학적 의미는 없음. 원전 설계지진평가에 고려되는 단층은 그것이 활동성단층이면서 부지로부터 거리별 최소길이 이상이어야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층들은 길이로 볼 때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활동성단층이 아님. 따라서 월성1호기 지반안전성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활동성 단층은 옹천단층 1개소로서, 최대지진동 평가결과 설계기준 내에 있어 기준을 만족함.